의안 번호	84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2.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84호

다. 제출일자 : 2023. 02. 09.

라. 회부일자 : 2023. 02. 13.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29, 3층

○ 규　모 : 약 115㎡(상담실, 사무실, 소회의실 등)

○ 인　력 : 5인 (센터장 1(무보수), 직원 4)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3.03.15.자로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교육사업, 장애인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도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대상 및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	시설현황	사업비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종암로129 (3층)	면적: 115㎡, - 보증금 15백만원 - 월 1,210천원	**266,658천원** (시106,321천원, 구160,337천원) - 인건비 137,780천원 - 운영비 23,341천원 - 사업비 91,017천원 - 임차료 14,520천원	2020.3.16. ~ 2023.3.15. (3년) 최초 위탁	(사)성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5명 - 센터장 1 - 직 원 4

<주요사업>

세부사업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초기상담, 일반상담, 위기가족관리, 전문기관 연계, 솔루션위원회, 동료 상담가 파견, 동료상담가 간담회 등
가족역량강화	- 부모교육, 자조모임(부,모, 비장애인 형재자매,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네트워크 회의, 돌봄기관 업무협약, 운영위원회
동행특화사업	- 동행사업(병원진료, 장애(재)판정 지원 등), 상담 등
홍 보	-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지원센터 운영사무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제2항[1]에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6조제2항[2]규정에

---

1)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관(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으로의 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3]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